

《2023. 1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가족채용 제한



관련 내용

○ 개요

- 공무원의 가족을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

○ 상세내용

- 고위공직자, 인사업무 담당자,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 기관,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 - (고위공직자)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 - (인사업무 담당자)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* 인사업무 담당자에는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포함
- (산하기관 담당자)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·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* 산하기관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관련 사례

- △△시청 간부공무원은 시청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,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최종 합격처리됨
-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그 산하기관의 감독부처 소속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추천
-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

부조리
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